

[]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는 신청연도를 기재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
신청인 (성능점검업자)	상호 또는 법인 명칭	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영업소 소재지 (전화번호:) , 팩스번호:) (이메일주소:)	

「기계설비법」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.

의
호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(공급자 보관용) 사본 나.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.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)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(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에 따른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)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	수수료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
	첨부서류	수수료